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7. 30.(화) 11:00 < 7.30.(화) 석간 > 배포 2024. 7. 29.(월)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
-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강화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(이하 '석유사업법') 시행령」 개정안이 7.30.(화)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.6.(화) 공포된 「석유사업법」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8.7.(수)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업계·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△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, △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, △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사항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·사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

아울러, 다양한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 관리를 위해 △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"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(油種)"을 추가하고, △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·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하였다.

이와 함께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*를 감안하여 석유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말 일몰예정인 "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"의 3년 연장도 확정하였다.

* 중동 원유 수입비중 : ('21) 59.8% → ('22) 67.4% → ('23) 71.9%

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업계와 소통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·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며, 세액공제,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서기관	김기열 (044-203-52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「석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주요내용**

□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(안 제5조)

○ 석유대체연료를 **바이오연료[1], 재생합성연료[2], 기타 석유대체연료[3]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** 구분하여 명시

1) 바이오디젤, 바이오중유, 바이오항공유, 바이오메탄올, 바이오에탄올
2) 재생합성디젤, 재생합성항공유, 재생합성메탄올, 재생합성가솔린
3) 그 밖에 탄소중립화 기여 또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연료

□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(안 제27조제3항)

○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, **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** 등을 감안하여 **'24.12월 일몰 예정**인 지원제도를 **'27.12월까지 3년 연장**

* 非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(16원/L) 內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

□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**"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(油種)"** 추가(안 제33조제6호)

□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(안 제41조의2)

○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**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**,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정보 수집 등 **지원사업 내용 추가***

* (기존) 석유대체연료 이용·보급 확대, 원료 확보, 정제·제조·유통·사용 과정에서 탄소감축 등

□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사항(안 제41조의3)

- **안전·품질 관리, 친환경성 확보** 등을 위해 **원료의 종류, 수급상황, 투입공정, 생산유종** 등의 사용내역을 **"한국석유관리원"**에 보고

* 보고의무 위반 횟수·정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

□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추가(안 제43조제1항제11호)

○ 석유, 폐유 등 **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·제조**한 바이오연료 공급 금지 및 벌칙 마련